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98

발의연월일: 2021. 6. 23.

발 의 자:이종배·성일종·태영호

박완수 • 박대수 • 김선교

추경호 • 박덕흠 • 김성원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공사는 붕괴·추락·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작업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가 강하게 요구됨.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이나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은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상주감리를 둘 수 없어 해체공사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바, 이에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체에 상주감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해체공사와 관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에 한해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안전사고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계획서 등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 미이행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52조제12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여 전체 공사기간 동안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계획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

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
	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 현장에
	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다만,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는 감리원을 배치
	하여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2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
	획서에 계획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